



제 3 3 7 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 02. 02(목)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80
제안일자	2023. 01. 20.
회부일자	2023. 01. 26.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실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강만수 의원 외 22명

2. 제안이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보건관리 사업 적극 시행, 장애인의 저소득·낮은 교육수준·의료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함. (안 제3조)
- 장애인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5조)
-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과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함. (안 제6조)

- 경상북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4. 관련부서 협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무혁신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감사관)

5.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 2023.01.26. ~ 02.01.(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5호)
- 의견제출 : 없음

6. 검토의견

☐ 제안이유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상북도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
기 위해 경상북도에 적합한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
장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장애인’과 ‘건강권’,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 상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일치시켜 시책 추진에 혼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
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3조는 ▲장애인 건강권 존중·보호·실현, ▲장애인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적극 시행, ▲장애인에게 적정
진료 및 재활 의료 제공, ▲건강권 침해 예방 대책 수립·시행,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홍보 및 건강권 인식 시책 추진 등
을 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 이는 법 제4조1)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
례에 명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
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
·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
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 제4조는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을 도민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법 제5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책무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수립 시행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이는 법 제6조3)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 연계하여 매년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3)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이는 법 제7조4), 제8조5), 제9조6), 제13조7), 제15조8), 제16조9), 제17조10)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검진 사업, ▲건강관리사업, ▲의료접근성 보장 사업, ▲건강교육 사업,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과 경비지원, 지정 취소,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4)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 5)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 6)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 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생략)
- 7)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 8)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9)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 10) 제17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 이는 법 제20조¹¹⁾, 제21조¹²⁾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과 지정취소를 규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도·감독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종합의견

-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국가·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중 의료보장에 대한 요구가 27.9%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빠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48.7%인 반면에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 11)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2) 제21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전체 등록장애인의 약 52%인 1,401,523명이 65세 이상으로 장애인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따라서,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2022년 12월 기준 경상북도의 등록장애인이 182,835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번째로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건강대책의 마련과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등 경상북도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시·도별 등록장애인 수

지역	등록장애인 수(단위 : 명)
전국	2,652,860
서울	391,859
부산	176,245
대구	127,611
인천	151,035
광주	69,476
대전	71,941
울산	51,473
세종	12,863
경기	584,834
강원	101,794
충북	97,966
충남	134,957
전북	132,014
전남	138,595
경북	182,835
경남	190,186
제주	37,176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022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 수

□ 연령별 등록장애인 수

연령	등록장애인 수(단위 : 명)
전체	2,652,860
9세 이하	33,289
10 ~ 19세	61,463
20 ~ 29세	95,840
30 ~ 39세	112,321
40 ~ 49세	220,897
50 ~ 59세	410,764
60 ~ 69세	626,388
70 ~ 79세	573,767
80 ~ 89세	446,152
90 ~ 99세	70,373
100세 이상	1,606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022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 수